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40
----------	-----

2024. 4. 30.(화)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안치영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4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11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4월 23일

-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안치영 의원)

가. 제안사유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 등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안 제3조제1항)
 - (현행) 10명 이내 → (개정) 15명 이내
-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 정비(안 제3조제3항)
 -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 신설 등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아동복지법」 제12조는 도지사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법과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2020.9.29.시행) 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확대되고 위원회 구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이 추가되는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음.
- 이에 원활한 충청북도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제1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행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 규정함.
- 안 제3조제3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시 아동복지학·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함.

다. 종합 검토의견

-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향후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한 조치이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12조”를 “「아동복지법」 제12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람 중”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으로, “사람으로 한다”를 “사람이 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호까지”를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를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4호,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아동 단체 또는 시민단체”를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로, “담당하였던”을 “담당했던”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 나. 충청북도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p> <p>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충청북도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p> <p>3. (생략)</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회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p>	<p>제1조(목적) ----- 「아동복지법」 제12조----- ----- ----- -----.</p> <p>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제7호-----</p> <p>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 -----</p> <p>3. (현행과 같음)</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15명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어</p>

현행	개정안
<p> <u>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u> </p> <p> <u>1. 충청북도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u> </p> <p> <u>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p> <p> <u><신 설></u> </p> <p> <u>3. 아동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u> </p>	<p> <u>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람이 된다. -----</u> </p> <p> <u>--- 제6호까지-----</u> </p> <p> <u>-----</u> </p> <p> <u>---</u> </p> <p> <u>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p> <p> <u>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u> </p> <p> <u>나. 충청북도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u> </p> <p> <u>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u> </p> <p> <u>-----</u> </p> <p> <u>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p> <p> <u>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 담당했던 ----</u> </p>

현행	개정안
<p>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u>담당하였던 사람</u></p> <p><u><신 설></u></p> <p><u><신 설></u></p> <p>4.·5. (생략)</p>	<p>-----</p> <p>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 <u>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u> <u>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u> <u>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u> <u>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u> <u>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u> <u>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6. <u>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u> <u>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u> <u>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u> <u>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7.·8.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p>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21.>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2021. 6. 2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3. 6.>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3. 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시·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군·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18. 3. 6., 2020. 9. 29., 2021. 6.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 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3. 6.>
-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3. 6.>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비용 발생 요인

- 위촉직 위원의 회의 참석 및 안전 심사 수당 등 지급
- ※ 근거 :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

3. 관련조문

- 제11조(위원의 수당)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4년 ~ 2028년 (5년간)

나. 추계 결과 : 연 2,790천원

- 참석수당 : 1,500천원
 - 100천원(기본2시간) × 15명 = 1,500천원
- 원거리수당 : 240천원
 - (30천원 × 3명) + (50천원 × 3명) = 240천원
 - *50km초과 ~ 100km이내: 30천원, 100km초과 ~ 200km이내: 50천원
- 안전심사수당 : 1,050천원
 - 70천원(300쪽 초과) × 15명 = 1,05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출	2,790	2,790	2,790	2,790	2,790	13,950
참석수당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원거리수당	240	240	240	240	240	1,200
안전심사수당	1,050	1,050	1,050	1,050	1,050	5,250
재원 조달	2,790	2,790	2,790	2,790	2,790	13,95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790	2,790	2,790	2,790	13,950
	지방세	2,790	2,790	2,790	2,790	13,950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